

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근한 의원 외 1인

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 의 자: 김근한·김민성 의원(2인)

찬 성 자: 김낙관·김원섭·김재우·김춘남
소진혁·양진오·장미경·정지원
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양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외교행정, 통·번역 국제교류 및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나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)

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전문가 위촉) ① 의장은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력, 통번역,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사안이 종료되면 그 직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

③ 의장은 위촉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(전문가 위촉) ① 의장은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력, 통번역,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사안이 종료되면 그 직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③ 의장은 위촉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9조 ~ 제12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0조 ~ 제13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</u></p>

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국제협력 자문수당 및 통·번역비 발생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한시적인 경비로 예상됨

구분	기준	단가(원)	횟수	금액(원)
국제협력 자문수당	1회 자문	300,000	4회 (초청 방문 각 2회)	1,200,000
통·번역비	1일 기준	700,000	4일	2,800,000

4. 작성자

- 구미시의회 의원 김근한